

공 급 자 적 합 성 확 인 기 준

방한용·패션용·스포츠용 마스크

부속서 17

(Masks for cold weather, fashion, and sports)

1.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방한용, 패션용 및 스포츠용으로 착용하는 마스크의 안전 요건,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해 규정한다. 여기서 마스크는 외기로부터 얼굴과 목의 피부, 입이나 코 등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섬유, 합성수지, 가죽 또는 모피 재질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 (일회용 마스크를 포함)을 말한다. 다만, 식품의약품안전처 「약사법」 및 고용노동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타법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
2. 인용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. 이러한 인용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.

- **KS K 0147**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
- **KS K 0736** 섬유제품의 알러지성 염료 함유량 시험방법
- **KS K 0739** 섬유제품 - 아조 염료로부터 생성되는 특정 방향족 아민의 분석 방법 - 제3부 : 특정 아조 염료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4-아미노아조벤젠 분석
- **KS K ISO 3071** 텍스타일 - 수성 추출액의 pH 측정
- **KS K ISO 14184-1** 텍스타일 - 폼알데하이드 측정 - 제1부 : 유리 및 가수분해 폼알데하이드 (증류수 추출법)
- **ISO 16186** Footwear — Critical substances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— Test method to quantitatively determine dimethyl fumarat (DMFU)
- **ISO/TS 16189** Footwear — Critical substances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— Test method to quantitatively determine dimethylformamide in footwear materials
- **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**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
- **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**
- **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** 유아용 섬유제품
- **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1** 가정용 섬유제품
- **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3** 가죽제품
- **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24** 합성수지제품
- **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**

3. 안전요건

3.1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의 기준 함유량은 4.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[표 1]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.

[표 1] 유해물질 안전요건

유해물질명		기준치
폼알데하이드 ¹⁾		75 mg/kg 이하
아릴아민 ²⁾		각각 30 mg/kg 이하
pH ¹⁾		4.0 ~ 7.5
형광증백제 ¹⁾		형광이 나타나지 말 것
유기주석화합물(TBT, Tributyltin) ³⁾		1.0 mg/kg 이하
알러지성 염료 ⁴⁾		각각 50 mg/kg 이하
다이메틸푸마레이트 ⁵⁾		0.1 mg/kg 이하
유해원소 함유량	총 납 ⁶⁾	100 mg/kg 이하
	총 카드뮴 ⁶⁾	75 mg/kg 이하
프탈레이트계 가소제 ⁷⁾	DEHP	총 합 0.1 % 이하
	DBP	
	BBP	
디메틸포름아미드(DMF) ⁸⁾		5 mg/kg 이하
디메틸아세트아미드(DMAc) ⁸⁾		5 mg/kg 이하

주 1. 섬유(부직포 포함)에 한하여 적용한다.

2. 염색한 섬유(부직포 포함)부분에만 적용하며, 대상물질은 KS K 0147, KS K 0739에 따른다.

3. 섬유(부직포 포함)원단 및 가죽재질에 코팅, 프린팅 등이 되어있는 경우만 적용한다.

4. 대상물질은 KS K 0736에 따르고, 적용되는 조성섬유는 폴리에스터, 나일론, 아크릴, 아세테이트, 트리아세테이트, 염화비닐 섬유이며, 염색한 섬유(부직포 포함)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.

5. 가죽과 모피 소재에 적용한다.

6. 금속 기질, 고분자 기질, 페인팅 및 유사코팅, 기타 재료(목재 등)부분에 적용하며, 섬유(부직포 포함)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 총 납의 경우 페인팅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/kg 이하로 적용한다.

7. 섬유 원단(부직포 포함)에 합성수지(합성고무 포함) 소재로 코팅 또는 프린팅 등의 가공 처리를 한 경우 및 합성수지(합성고무 포함) 소재의 부자재에만 적용하며, 대상물질은 DEHP [Di-(2-ethylhexyl) phthalate,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(CAS No. 117-81-7)], DBP[Dibutyl Phthalate, 디부틸프탈레이트(CAS No. 84-74-2)], BBP[Benzyl butyl Phthalate, 벤질부틸프탈레이트(CAS No. 85-68-7)]이다. 단, 금속 및 고분자 기질 위에 페인트 코팅된

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부직포 및 폴리우레탄 등으로 구성된 안감, 중간층, 겉감에 대해 제조과정 중에 유기용제를 사용한 경우 적용한다.

3.2 안전요건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한 생활용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유해물질이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시험 또는 제3자 시험·검사기관, 외국의 시험성적서, 원자재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에 따랐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4. 시험방법

4.1 폼알데하이드 KS K ISO 14184-1에 따른다.

4.2 아릴아민 KS K 0147, KS K 0739에 따른다.

4.3 pH KS K ISO 3071에 따른다.

4.4 형광증백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[별표 2] 중 부직포 순도시험에서 형광증백제 시험방법에 따른다.

4.5 유기주석화합물 KS K 0737에 따른다.

4.6 알러지성 염료 KS K 0736에 따른다.

4.7 디메틸푸마레이트 ISO 16186에 따른다.

4.8 유해원소 함유량 “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” 부록 A에 따라 시험시료를 준비 후 부록 B에 따른다.

4.9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“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” 부록 C에 따른다.

4.10 디메틸포름아미드(DMF)의 시험은 ISO/TS 16189 시험방법을 따른다.

4.11 디메틸아세트아미드(DMAc)의 시험은 ISO/TS 16189 시험방법을 따른다.

5. 표시

최소단위 포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표 9]의 규정사항 및 다음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, 표시사항 상단의 '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' 문구는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. 다만, 취급상 주의사항은 포장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다.

5.1 품명 방한용, 패션용 및 스포츠용 마스크 중 해당 되는 제품으로 표기한다(예: 방한용 마스크).

5.2 재질의 종류 사용한 재질은 안감, 중간층, 겉감 등으로 구분하고, 부직포의 경우 제조방법(예시 : 스펀본드, 멜트 블로운, 전기방사 등)도 표기하여야 한다. 재질에 대한 표시는 섬유의 경우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1(가정용 섬유제품), 가죽 및 모피의 경우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3(가죽제품), 합성수지의 경우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24(합성수지제품)의 표시사항을 따른다.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부록 A.1을 참고할 수 있다.

5.3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(수입품에 한함)

5.4 제조국명

5.5 제조연월 제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(제조연월, 최초 판매시즌, 로트번호 등).

5.6 치수

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(예시 : **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규격**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스크를 펼친 후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세로로 접어 가장 긴 길이인 코편 위의 꼭지점부터 턱 부분 꼭 지점까지 측정하여 **[표 2]**과 같이 치수를 표시할 수 있다).

[표 2] 치수표시 방법

구분	세로길이
특대형	171 mm 이상
대형	150 ~ 170 mm
중형	136 ~ 149 mm
소형	135 mm 이하

5.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

'표시자'는 제품하자 및 리콜에 대해 책임을 지는 '제품 문의처', '소비자상담실' '제조자명(국산품에 한함)', '수입자명(수입품에 한함)' 또는 '판매자명'으로 표시할 수 있다.

5.8 사용상 주의사항

사용상 주의사항에는 다음을 표시한다. 사용상 주의사항은 포장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설명서 등에 별도 표시할 수 있다.

5.8.1 부직포가 사용된 제품은 세탁하여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.

5.8.2 이 제품은 황사, 미세먼지, 비말,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5.8.3 이 제품에 방향제, 탈취제, 살균제를 처리하거나 또는 직접 뿌리는(덧붙이는 패치 등 포함) 경우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

부록 A. 세부 표시방법(예시)

A.1. 서론 이 세부 표시방법(예시)은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품목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.

[A.1] 재질 종류별 표시방법(예시)

종류	표시 방법	비고
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겉감) 폴리에스터 95 %, 폴리우레탄 5 % · (중간층) 폴리프로필렌 100 % · (안감) 면 80 %, 레이온 20 % 	혼용률을 알지 못할 경우 조성만을 표시할 수 있음
	비고) 부직포의 경우 제조방법을 표기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겉감) 폴리에틸렌 100 %(스펀본드) · (중간층) 폴리프로필렌 100 %(멜트 블로운) · (안감) 폴리아미드 100 %(전기방사) 	
합성수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겉감) 폴리아미드(PA) · (중간층) 폴리프로필렌(PP) · (안감) 폴리에틸렌(PE) 	-
가죽 또는 천연모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겉감) 천연모피(밍크) · (중간층) 인조가죽 · (안감) 천연가죽(양가죽) 	-

제 정 :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 - 0492호(2021. 10. 26.)